

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K-OTC시장 운영규정 | 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|
|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| 마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|
| 다.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| |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K-OTC시장 운영규정 일부개정(2017/4/18개정·시행)

1) 목적

-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(이하 Pro-OTC)을 신설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협회는 기관투자자, 전문투자자 등 협회가 인정하는 자(이하 Pro-OTC 회원)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(이하 Pro-OTC 시스템)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(57조의2 1항 신설)
 - Pro-OTC 회원이 영 177조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등의 장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
- Pro-OTC 회원의 자격,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 Pro-OTC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(57조의2 2항 신설)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2017/4/27개정·2017/5/22시행)

1) 목적

- 금융권역간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규제와 유사 수준으로 규제 완화하고, 한도규제 폐지 등 재산상 이익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 부과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2) 주요 내용

□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등에 관한 한도규제 폐지 및 공시의무 도입(2-65조 1항)

- (기존)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·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시, 인별·회사별 연간한도 준수 의무화
- (개정) 인별·회사별 제공한도 폐지 및 공시의무 신설
 -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,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10억 초과 제공·수령시 제공(수령)기간, 제공(수령)받은 자가 속한 업종, 제공·수령 목적 및 경제적 이익 합계액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

□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(2-67조 2항 및 3항)

- (기존) 재산상 이익 제공·수령 내역을 5년 이상 기록·보관
- (개정)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재산상 이익 제공현황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
 -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 의무화
 -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기준 제정·운영
 -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,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 보고

□ 재산상 이익 제공내역 제출 동의(2-67조 5항)

- (기존) 거래상대방의 기관장이 서면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
- (개정) 거래상대방 소속 임직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내역 제출

□ 그 밖의 사항(2-68조의2 4항~9항)

-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재산상 이익 규제체계 현행 유지
 - 신용평가회사는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규제체계 유지
- 소액의 기프트콘·마일리지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 배제
 - 3만원 이하의 물품·식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·수령으로 보지 않으나,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3만원 이하의 기프트콘(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'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'에 한함) 및 거래실적에 연동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·마일리지도 재산상 이익 규제 대상에서 제외



다.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제정(2017/4/27제정¹⁾)

1) 목적

- 협회에서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원활한 업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
 - 금융위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완화 방안을 발표('16.4.27)하고 관련 법령 개정 진행

2) 주요 내용

- (적용 펀드) 집합투자규약 상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공모펀드(3조)
 - 다만, 펀드의 특성상 성과보수 수취가 부적정한 펀드 제외
 - ELF(투자수익 사전 확정), MMF(단기자금 운용), 전환형 펀드, ETF·Index펀드(지표 추종), 동일펀드 100% 투자 재간접펀드(FoF) 및 100% 운용위탁 펀드(운용 능력과 무관)

- (적용 원칙) 일반펀드에 비해 낮은 운용보수율 적용, 성과보수 상한을 초과수익 이내로 설정(4조)
 - 초과수익이란 기준수익률(절대수익률 또는 BM지수+ α)을 초과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전
 - 성과보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위험추구 통제 및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부과

- (성과보수 유형) 펀드 유형(상장·비상장)에 따라 선택(5조)
 - (최고수위형) 상장 펀드에 적용
 - 결산일의 수정기준가격(펀드의 누적 수익률 관리를 위해 산정된 기준가격)이 종전 성과보수 수취 시점의 수정기준가격(High Watermark) 또는 HWM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
 - (선형) 비상장 펀드에 적용
 -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따른 환매대금 산정결과 초과수익 발생시 성과보수 수취
 - 절대수익률 또는 상대수익률(BM지수+ α) 2가지 방식 가능

1)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공고 2016-199호('16.6.27) 및 2016-200호('16.6.27)에 따른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 일 이후 설정·설립되는 성과보수 공모펀드에 대하여 적용



펀드 유형별 사용 가능한 성과보수 유형

구분	상장(환매금지형) 펀드	비상장(개방형) 펀드
유형별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산정 기준) 펀드 수익률 ○ (수취 시점) 결산시점(반기 또는 연간) ○ (산정 업무)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산정 기준) 투자자별 수익률 ○ (수취 시점) 환매시점 ○ (산정 업무) 판매회사에 위탁

(기준 설정) BM지수, 절대수익률 및 성과보수율 등은 운용사가 자율 결정(6조, 7조)

- 세부 내용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(15조 1항)

(초과수익 산정) 펀드 유형별 초과수익 산정 방식 규정(10조)

- (상장 펀드) HWM 또는 HWM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수정기준가격에 펀드의 총 좌수를 곱하여 산정
- (비상장 펀드) 환매금액과 기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금 간 차액

(성과보수 산정) 초과수익에 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산정(11조)

- 성과보수율은 운용사가 자율 결정
 - (참고) 한국형 헤지펀드는 통상 15% 수준의 성과보수율 적용

초과수익 및 성과보수 산정 예시

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성과보수율: 초과수익의 15% ② 보수 및 수수료 등: "0"
상장 펀드(환매금지형)	('17.4.1) 펀드 설정 100억원(기준가 1,000원) [Case I : 절대수익률 미설정] ('17.10.1) 수정기준가 1,100원 → 초과수익 10억원 $[(1,100-1,000) \div 1,000 \times 100\text{억원}]$ 성과보수 1.5억원 $(10\text{억원} \times 15\%)$ [Case II : 절대수익률 5% 설정] ('17.10.1) 수정기준가 1,100원 → 초과수익 5억원 $[(1,100-1,000 \times (1+0.05)) \div 1,000 \times 100\text{억원}]$ 성과보수 0.75억원 $(5\text{억원} \times 15\%)$



초과수익 및 성과보수 산정 예시 (계속)

비상장 펀드(개방형)	<p>[Case1] 투자원금 1억원, 환매금액 1.1억원 → 초과수익 500만원[1.1억원-1억원×(1+0.05)] 성과보수 75만원(500만원×15%)</p> <p>[Case2] 투자원금 1억원, 환매금액 1.04억원 → 초과수익 0원[1.04억원-1억원×(1+0.05)=-100만원] 성과보수 없음(초과수익 0) * 기준수익률: 5% 적용</p>
-------------	--

□ (업무 위탁) 운용사는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(상장 펀드) 또는 판매회사(비상장 펀드)에 위탁(12조, 13조)

- 성과보수는 운용사에 귀속되는 금전으로 운용사가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, 관련 정보의 부재 등으로 동 업무의 위탁 불가피
 -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초과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지급
 -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성과보수 산정내역 보관·관리 및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

□ (투자자 보호) 성과보수 관련 사항 및 그 위험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(15조)

- 상장 펀드의 경우 사전 공시(성과보수 발생 가능성, 예상금액 등) 및 사후 공시(성과보수 산출내역, 인출금액 등) 의무화

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개정(2017/4/28개정·시행)

1) 목적

-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, 관련기준,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불가하여, 모범규준을 정비하여 투자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
 - 협회 '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'에서는 임직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, 관련기준,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



2) 주요 내용

- (투자자 인식제고 실질화)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방지교육(집합, 전달, 화상 등)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
 - 이에 따라, 투자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, HTS 등을 통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대체하고, 다만, 임직원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관련 교육의무는 현행 유지

마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일부개정(2017/4/28개정·시행)

1) 목적

- 펀드의 해외채권 투자규모가 증가 추세인데 현행 집합투자자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외화표시 채권 평가시 적용할 소수점 처리 방법은 있으나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어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만들기 위함
 - 주(主)·부(副) 사무관리사간 펀드 회계처리, 기준가격 검증 업무 등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화표시 기준가격 펀드의 판매 활성화에 장애 요인
-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체계 개편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가이드라인 내 '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'에 외화표시 채무증권의 평가시 소수점 자리 수 적용 방식 추가
 -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하되, 제공되는 소수점 자리 수가 다른 경우 그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
- 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 상 소수점 자리 수 처리 적용례 대상을 '유가증권 등'에서 '채무증권'으로 변경
 - 세부처리 사례를 그 제정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을 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
- '사모투자전문회사'를 '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'로 변경 반영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